■ 주민등록법 시행령 [별지 제33호서식] <개정 2024. 12. 3.>

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

발급 신청일		유효기간 20○○.○○.○○
성 명	한글	사 진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㎝×4.5㎝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)
	한자	
주민등록번호		
발급 구분	[]거주자 []재외국민	
주 소		

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읍·면·동장 직인

유의사항

1.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2.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·사진 및 유효기간에는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,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진위 확인 방법

1.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(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'1382') 또는 정부24(www.gov.kr)를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진위 확인 시 "……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."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이며, 이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읍·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.

210㎜×80㎜(백상지 80g/㎡)